KB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<u>설명서</u>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<u>참고 자료</u>이며, <u>실제 계약</u>은 <u>KB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</u> 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

■ 상 품 명 : KB 퇴직연금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<u>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형의</u>

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</u>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등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
가입자격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
가입금액	제한 없음		
계약기간	고정금리형	1개월에서 60개월(5년)이내에서 연,월,일 단위로 계약	
	변동금리형	1년(회전기간 3개월, 6개월 2종류)	
세제혜택	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		

(세금공제전 연%)

		(//! =	5등세신, 원/)	
	구 분	계약기간		이자율
만기 이자율 (2014.02.16 기준)		월구간	일구간	(연%)
	고정 금리형	1 개월~ 3 개월 미만	28일 이상 ~ 93일 미만	1.45
		3개월~ 6개월 미만	93일 이상 ~ 183일 미만	1.75
		6개월~ 9개월 미만	183일 이상 ~ 274일 미만	1.95
		9 개월 ~ 12 개월 미만	274일 이상 ~ 367일 미만	2.05
		12 개월 ~ 18 개월 미만	367일 이상 ~ 555일 미만	2.10
		18 개월 ~ 24 개월 미만	555일 이상 ~ 735일 미만	2.15
		24 개월~30 개월 미만	735일 이상 ~ 915일 미만	2.30
		30 개월~36 개월 미만	915일 이상 ~ 1096일 미만	2.30
		36 개월 ~ 60 개월 미만	1096일 이상 ~ 1830일 이하	2.35
		60 개월		2.40
	변동	1년(3개월 회전)		1.75
	금리형	1년(6기	1.95	

- 분할인출은 만기(중도)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(근로자)별로 횟수를 산정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
 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
 - 2.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
- 고정금리형

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
사 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그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 상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난선고를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 우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	최초 만기 前 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○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○ 12개월 이상 :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	만기 재예치 後 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지율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-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- 12개월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
□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		
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	-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(가산금리 포함)	
□ 교체애애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

분할인출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

(세금공제전,

2011. 12. 19기준)

			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만기이자율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율	
	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: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 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 적용)			
	● 변동금리형 사 유 □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
분할인출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 (세금광제전,2011.12.19 기준)	지급 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 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 양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와 요건을 갖춘 경우	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신규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만기이자율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되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

	□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□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□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□ 교체매매 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에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(세금공제전, 연%) 예치기간 이자율 15일 미만 0.1 15일 이상~ 1개월 미만 0.3 1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1.0	가산금리 포함)	
	: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 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 적용)			
	■ 고정금리형(2011.12.19 신		0171 71101171 77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
중도해지이자율 (세금공제전,2011.12.19 기준)	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만기이자율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	
-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이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			도해지 이자율 적용	

	■ 변동금리형			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	
	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(세금공제전, 연%) 예치기간 이자율 15일 미만 0.1 15일 이상~ 1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1.0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	
		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P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			
	(세금공제전				
	경과기간		이자율		
만기후이자율	만기후1개월이내	만기이자율 X 50%			
(2011.12.19 기준)	만기후 1개월초과~3개월0 만기후 3개월초과	내 만기이자율 X 30% 0.5			
	- 만기이자율 : 신규가입일 또는	최종 재예치일의 일반정기예금 그	교시이자율 적용		
이자지급방식	고정금리영 셈하여 민	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
	I 번통금리영 I	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
	-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아래의 재예치 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합니다 *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				
		2객에 안아서 사공 새에지!	게 내안 내용들 고객이 시청안		
자동재예치	┃	금리형 고정금리형 위 계좌 월(년) 단위 계좌	변동금리형 계좌		
	재예치기간 12기	최초 가입기간과 배월 동일 기간	최초 계약기간단위와 동일 기간		
계좌의 해지	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				
예금자보호 여부	이 퇴직연금정기예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 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 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	

3 유의 사항

■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(☎1588-9999) 또는 **KB 국민은행홈페이지(www.kbstar.com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**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